

契約終了以前の 諸問題

— 仲裁에서 讓渡·用語 등 —

—承 前—

37. 技術契約仲裁條項

1) 技術導入契約에 關聯하거나 契約의 違反을 理由로 하여 契約當事者間에 紛爭이 發生하였을 경우 當事者끼리 解決하지 못하면 法院이나 第3者인 仲裁人을 選定, 委囑하게 된다.

仲裁條項이란 技術導入契約中에서 契約以後 紛爭이 發生하였을 경우를 豫想하여 法院에 公的 訴訟節次를 밝지 않고 契約當事者가 미리 仲裁人을 選定함으로써 그의 判定에 最終的 解決을 委囑하는 條項을 말한다.

이같이 仲裁人에게 繫爭의 解決을 委囑하게 되면 그 節次가 原則적으로 非公開이므로 當事者의 秘密이나 信用이 維持되며 특히 노우하우契約의 경우에는 매우 有利하게 된다.

또한 通常的 裁判節次보다 時間과 經費가 節約되며 仲裁人 自身이 經濟的 實體나 技術知識에 밝은 專門家를 選擇할 수가 있으므로 法律上的 問題뿐 아니라 具體的인 事項까지 그 妥當性을 裁決하는 利點이 있다.

2) 한쪽 契約者가 仲裁條項을 無視하고 提訴하였을 경우에도 그 相對 契約者는 契約上에 仲裁條項이 있음을 抗辯할 수가 있으며 이 事實이 認定되면 그 訴訟自體가 不適法하다고 却下되기도 한다. 國家에 따라서는 民事訴訟法에 仲裁人의 仲裁判決이 確定判決과 同一効力을 認定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러므로 外國에서 한 仲裁判決도 自國內에서 有効하게 되거나 그 反對일 경우도 있다.

3) 契約當事者의 合意에 따라 紛爭이 發生하였을 때 마다 仲裁機關을 만들어 仲裁을 依頼하는 方法도 있으나 時間과 人力 등을 豫察하여 나라에 따라서는 國際的인 商事仲裁機關을 利用하기도 한다.

同仲裁機關으로는 파리所在 國際商業會議所(ICC)가 있는데 42個國에 國內委員會를 設置하고 紛爭解決을 企圖하며 如意치 않을 경우에는 파리의 仲裁法廷에서 最終判斷을 하게 된다.

4) 仲裁條項에는 仲裁人의 數, 人選(當事者 各1名과 第3者 1名 程度), 仲裁場所, 仲裁機關, 仲裁節次를 運用할 準據法, 仲裁方式 등을 後日을 위하여 明示해야 한다.

38. 契約의 讓受·渡條件

技術導入契約의 讓渡는 契約當事者의 한쪽인 實施許諾者 또는 實施權者가 다른 第3者와의 契約에 따라 그 契約當事者로서의 地位를 包括적으로 移轉하거나 혹은 契約上의 一部權利義務關係인 技術의 收受權, 契約製品의 販賣權 등의 讓渡를 말하며 이같은 例는 母社와 傍系會社 또는 關聯企業間에 事業의 全部나 一部를 讓渡하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다.

이같은 契約의 讓渡는 契約相對의 實質的인 變更이 되므로 그 相對者에게는 重要한 問題가 되며 實施權者側에서의 讓渡는 實施許諾者側에서 볼 때 秘密維持와 承繼者의 能力에 掛念하게 된다.

또한 實施許諾者側의 讓渡는 送金先의 變更이 우선 問題이겠으나 相對的 經營方針 또는 技術管理方針이 바뀌게 되므로 實施權者로서는 技術指導에 留意해야 한다. 따라서 契約上에 讓渡를 禁止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事前에 文書로 承認을 받도록 그 要件을 明文化하는 것이 通念이 되어 있다. 특히 實施許諾者가 優位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實施權者側의 讓渡는 一切 禁止하거나 實施許諾者의 承認을 받게끔 規定하면서도 實施許諾者의 讓渡에는 아무런 表示를 하지 않는 경우에 操心해야 한다.

한편 合併, 相續 등 契約當事者의 意思와 關係없이 이루어지는 權利義務의 移轉은 契約效果 아닌 組織法上的 效果로서의 合併에 의한 消滅企業으로부터 新設企業 또는 合併後 存續하는 會社에 包括적으로 承繼하게 된다.

이러한 合併은 個個의 權利義務에 대하여 各行爲를 必要로 하는 營業讓渡契約의 경우와는 다르다. 이같이 合併, 相續 등에 의해 契約當事者의 地位는 當然히 承繼者에게 移轉하게 되나 나라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다.

‘合併의 경우에 留意해야 할 점은 合併前에 企業別로 導入되어 競合하는 分野에서 서로 다른 系統에서의 技術이 合併後 1個企業에 集中하게 되므로 특히 노우하우 契約 등에는 秘密維持上 困難한 問題가 發生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같은 問題는 合併準備期間中에 미리 調整해 두는 것이 賢明하다.

39. 技術導入契約書와 用語

技術導入契約書는 單一用語로만 作成하는 경우와 當事者國들의 諸用語로 作成하는 경우가 있다.

契約書의 正本은 契約當事者の 數交만큼 作成되므로 同一用語의 경우에는 署名된 것이 正本이 되고 다른 것은 寫本으로 取扱된다.

諸用語로 契約書を 作成하는 경우에는 그 모두가 正本이 되어 各各 署名할 경우와 어느 1個用語에 의한 것을 正本으로 하고 다른 것은 副本으로 取扱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相異한 用語의 諸契約書を 모두 正本으로 할 경우에도 後日에 契約解釋上 紛爭이 發生할 경우가 있으므로 契約書中 어느 用語의 契約書を 解釋上 優先한다고 미리 指定해야 한다.

또 어느 1個用語를 正本으로 할 경우 解釋上 異見이 있는 때에는 正本用語에 의거하여 解釋함이 常例이다.

40. 契約의 終了

1) 技術導入契約는 契約期間의 滿了, 兩當事者の 合意에 의한 解約, 한쪽의 債務不履行 등의 理由로 말미암은 相對 當事者の 解約權行使 등에 의하여 終了함으로써 契約上의 權利義務關係는 原則적으로 將來를 향하여 消滅하게 된다.

또한 契約當事者인 法人의 解散, 契約當事者の 死亡, 關係法에 의한 認許可取消, 契約對象인 特許權의 失効 또는 秘密性喪失에 따른 노우하우의 價値消滅, 契約締結時에 豫想하지 못했던 重大한 事情의 變更등도 契約終了의 原因이 되기도 한다.

2) 以上の 原因中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한쪽 當事者の 意思表示에 따른 解約의 경우이며 이 問題는 契約上에 어떠한 경우 解約한다고 明示하는 것이 常例이다.

明示條件으로서는 契約當事者の 債務不履行 즉 實施權者가 實施料를 支拂하지 않거나 秘密維持義務違反, 實施許諾者の 承認없이 再實施權을 第三者에 許諾 또는 輸出制限違反, 미니멈條件의 不達成, 베스트 에 포트클로즈에 의해 정해진 目標의 不達成, 契約相對者の 破産, 吸收合併 등에 의한 會社의 消滅등이 主要對象이 된다.

3) 相對當事者の 契約違反에 따른 解約에 대해서는 대개의 경우 한쪽 當事者가 文書로서 相對側의 違反事實을 通告한 후 一定期間以內에 滿足할만한 是正措處를 講究하지 않을 때에는 一方的으로 解約한다는 뜻의 規

定을 設定處理한다.

이 경우 實施權者側이 契約違反時에는 實施許諾者에게만 一方的 解約權을 認定하면서 實施許諾者側의 契約違反에 대해서는 아무런 規定을 明示치 않을 때가 問題가 된다.

또 當事者雙方에 解約權을 認定하면서 어느쪽의 責任인지를 不問하고 解約에 의해 契約이 終了된 후에는 契約製品뿐 아니라 競合品이나 類似品까지 實施權者에 의한 製造를 禁止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實施權者의 債務不履行을 理由로 하는 解約의 경우에 契約終了後의 製造禁止는 不得已하다 하겠지만 그외의 경우는 片務的인 規定이 된다.

다음이 實施許諾者가 언제나 一方的으로 解約하게 되는 規定은 實施權者의 地位까지 不安定하게 할 뿐 아니라 導入技術의 企業化를 위해 投資하여 設備한 경우에는 不測의 損失을 볼 수도 있으므로 實施權者는 絕對容認해서는 안된다.

4) 契約의 終了에 따라 實施權者의 實施料支拂義務는 終了하는 한편 特許權, 商標權 등의 工業所有權은 當然히 使用될 수 없게 된다.

노우하우契約의 경우에는 契約期間中에 實施權者에 提供된 技術資料는 返還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노우하우의 使用禁止도 要求하기도 한다.

한편 當事者間의 合意에 따라 契約終了에도 特定條項의 部分的 有効로 存續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 例로서는 契約期間中에 製造된 契約製品은 期間終了後에도 販賣하되 이에 適合한 實施料는 支拂하는 등의 契約終了時在庫品販賣規定, 노우하우契約에 관한 契約終了後의 秘密維持義務, 類似品이나 競合品の 製造販賣中止義務, 契約期間中에 實施權者가 한 改良發明을 契約終了後에도 繼續하여 實施權者에게 實施許諾하는 義務, 特許權에 관한 相互不爭義務등을 들 수가 있다.

5) 契約期間滿了時에 다시 契約의 更新 또는 契約期間의 延長與否, 그 節次의 方法등도 契約上 明文規定을 設定함이 通例이 되어 있다.

更新規定으로는 兩當事者 互合意에 의해 다시 契約期間을 延長하는 경우, 契約期間終了 一定期間前까지 한쪽으로부터 書面에 의해 契約은 終了한다고 相對에게 通告가 없는한 다시 一定期間을 自動적으로 更新한다는 例 등이 있다.

끝으로 技術導入契約更新에는 關係法の 認許可가 必要한 경우를 考慮하여 契約中에 政府의 認許可를 條件으로 한다는 文脈을 挿入하는 것도 賢明한 處事가 될 것이다. (끝)